

## 일 본

## 일본의 연구개발 관련 제조물책임법 현황

張 東 勳<sup>1)</sup>

연구개발의 위험은 불가항력적 위험과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위험은 재해·전쟁 등에 의한 사회적인 변화를 말하며 관리가능한 위험은 개발담당자 자신의 능력·지식의 부족과 개발계획의 부실, 개발자의 마음의 준비자세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미국·일본·구미의 선진제국에서는 이러한 각종위험가운데 제조물책임문제(Product Liability)가 연구개발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제품에 결함이 있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도록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제조물책임에 대한 대응책으로 선진제국의 기업연구소에서는 제품의 기획·개발·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품결함이 문제가 될 때에는 기획·설계시에 아무리 상세한 검토를 했다고 해도 검토결과가 문서화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조물책임배상을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의 결과로 획득한 제조물·기술이 시장유통단계에 이르러 어떤 결함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대한 법제화가 연구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위험도 크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적 문제와 대응책 등을 일본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국내기업에게 그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정책적인 시사점은 무엇인가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 제조물책임의 정의 및 법적성립조건

제조물책임이란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의하면 제조업자 등은...(중략) 인도한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법조문가운데 인도한 제품의 결함에 의하여 라고 한 부분은 당해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며 제조물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요건임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물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특수한 형태로 무과실책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의 문제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손해론)가 존재한다. 이는 인과관계의 문제이며 이것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손해론에 따르면 ① 과실책임주의에서는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아닌 무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피해자 같은 전차에서 떨어져 다쳤으나 피해자가 자살하기 위하여 자행한 자해행위인 경우 전차운전자는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②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일식 등에 의한 전파장해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대혼란의 발생이나 지진에 의한 피해발생 등이다. ③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를 받은 경우라도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이기는 하나 그 가운데 배상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제외된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불법행위를 발생시킨 원인과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 제조물책임의 경우도 이점에 있어서는 같다.

그러나 인과관계에서는 우선 사실상의 인과관계(자연인과관계라 한다)와 법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상의 인과관계는 사회통념상 또는 자

연과확상 가능성에 입각하여 인과관계가 있으면 쉽게 인정된다. 그러나 법적 인과관계는 배상범위의 한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기술을 말한다.

#### 배상범위

법적 인과관계는 ① 가해행위(A)와 손해발생 (B)사이에서 A가 없었다면 B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존재하고 ② 일반적으로 보아도 그와 같은 가해행위가 존재하면 동일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가해행위와 손해간의 법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론적인 기반을 토대로 한다.

인과관계는 불법행위의 성립조건으로서 가해행위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서는 안되며 법적문제가 될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범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 416조에 규정되어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시에도 동법 제416조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행위의 결과로서 통상 발생하는 손해는 물론 그 이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라고 해도 예견 가능한 경우에는 가해자측은 피해자측에게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제조물 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조물 책임도 불법행위에 대한 인과관계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해석에 의하여 민법 제416조를 유추 적용하여 배상의 대상이 된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도 민법 제710조에 의하여 배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실에 설치해 사용하던 결함계측기에 의하여 연구개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결함계측기 제조업자는 제조물 책임을 지고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인도와 손해배상청구

제조물 책임의 효과는 제조업자 등 가해자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배상의 방법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금전배상주의라고 한다(민법 제417조 및 제722조).

그러나 일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의 종류는 ① 물질적(재산상) 손해 ② 정신적 손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물질적인 손해의 경우는 통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권적서를 제시하거나 영수증의 제시등으로 그 손해액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무상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신적인 피해의 경우는 매우 복잡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제조물책임의 경우도 피해자의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결함제품의 사고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불유쾌감내지 정신적인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구체적인 위자료의 산정에 있어서 어떤 요인을 고려해야만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의 산정은 피해자 및 가해자 모두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모두의 사정이란 피해자측의 ① 피해자의 고통정도 ② 연령 ③ 직업 ④ 자산상태 ⑤ 사회적 지위를, 가해자측의 경우는 위자료와 합의에 대한 가해자의 성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 의무는 피해자에게 제조업자가 인도한 제품결함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예를 들면 연구소에서 사용하려고 직접 만든 계측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사용한 연구개발요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당해결함계측기에 의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제조물책임법상 "인도하다"의 의미는 제조업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제조물의 점유가 타인에게 인도된 경우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시장유통경로를 거쳐 소유권의 이전되거나 임대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인도의 상대방은 최종소비자뿐만 아니라 중간소비자를 포함한다. 여기서 인도란 반드시 제조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인도되어야함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도난품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벗어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제조물책임법상 타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 타인이라 함은 인도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인도상대방과 손해배상청구주체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 제조물책임존재의 입증책임

제조물책임존재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자할 때는 피해자는 ① 결함의 존재와 시기 ②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해야만 한다.

이 때 증명은 소송상의 증명으로 엄격한 자연과학상의 증명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통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진실성과 개연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직접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사실상 추정을 활용하여 입증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식품·공해·약물소송의 경우 가해자의 과실내용이 고도화·객관화·추상화되어 가해자의 주의 의무위반에 대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기업의 안전대책미흡이 인정되면 결함과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 개발위험의 존재와 면책사유

제조물책임이 무과실책임의 하나라고 해도 그것은 결과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책임법상 소정의 반대의견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진다. 기업의 기술개발과의 관계에서 면책사유의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책임을 면할 수 있는 항변에는 재료제조업자의 항변으로 구분된다. 어느 것이나 정책적 배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① 개발위험항변

개발위험항변은 제조업자가 신제품개발과 기술혁신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위험으로 인하여 개발을 주저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 배려한 정책적인 조항이다. 개발위험이란 문제의 제조물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시점의 과학기술적 지식수준으로 보아 당해제조물의 결함발견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위험까지도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제조물책임의 본질을 위험책임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해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험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이 저해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견해가 입법의 근거가 되고 있다.

개발위험에 대한 사실은 제조업자가 입증해야만 한다. 이 때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란 특정 제조업자만의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최고의 지식을 의미한다. 또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조업자가 상기 최신·최고의 지식을 알았다고 해도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식은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 과학적·기술적 증명의 결과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에 달려 있다.

##### ② 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항변

부품·원재료 제조업자도 부품·원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부품·원재료 공급자는 통상적으로 그 부품과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설계지시에 따라 제조한다. 이와 같이 지시에 따른 결과,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하청관계에 있는 부품·원재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정치적 고려로 제조물책임을 전가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다. 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항변의 입증은 주문기업의 지시내용, 자사의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시효와 제소기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채권의 경우보다도 시효가 짧다. 즉, 민법에 의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시점으로부터 3년(소멸시효)이 경과한 경우 소멸한다. 3년의 단기시효를 정한 이유는 불법행위의 요건입증과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을 제소기간은 불법행위의 제소기간 20년보다 10년이나 짧다. 그러나 이는 일정기간경과에 의한 법률관계의 확정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차이는 없다. 기간이 10년이나 단축된 것은 ① 오늘날 기술진보의 정도 내지 속도 ② 제조물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사이클변화 ③ 제조물의 통상 사용기간이 최장 10년인 점 ④ 각종 서류보관의 기관과의 정합성 ⑤ 제조물 관련 문서의 기업보관능력의 한계 등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제조물이 인도된 시점이다. 그러나 의약품부작용 등은 오랫동안 신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축적손해와 일정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나타나는 잠복손해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앞에서 정의한 인도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난 시점으로부터 10년간으로 하고 있다.

####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일본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세계적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환경·공해 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미·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제조물책임 즉, 기업이 제조해 시장에 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방어인식이 높아지면서 제조물책임의 범위가 매우 추상적이고도 고도화되는 경향이다.

과거의 지역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한 경쟁으로부터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지구적 국제 경쟁속에서 우리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의 하나로써 아직까지 그다지 큰 관심과 배려를 하지 않아 왔던 제조물책임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살펴본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우리에게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첫째, 기업의 제조물책임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제고하고 둘째, 소비자에게는 안전감을 심어주면서도 기업의 기술혁신의지를 꺾지 않는 법적대응 자세를 확립해야하며 셋째, 국제시장경쟁을 겨냥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보완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하겠다. 또한 민간기업의 생존적 전략차원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있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면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제품의 생애주기 단계인 연구개발단계에서조차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주석1) 기업기술연구원, 기획실장(Tel: 02-785-1437)

